

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
제정	2009. 8. 10	조례 제1683호	
개정	2010. 11. 25	조례 제1731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	
일부개정	2011. 8. 9	조례 제1786호(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	
일부개정	2014. 8. 14	조례 제2005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	
일부개정	2016. 12. 20	조례 제2223호	
일부개정	2017. 6. 20	조례 제2264호(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)	
일부개정	2018. 7. 31	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	
일부개정	2018. 8. 30	조례 제2403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	
일부개정	2019. 9. 27	조례 제2534호	
일부개정	2023. 12. 28	조례 제3059호	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적용범위)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위원회 설치 등)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광명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,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
2. 이동지원센터 설치·운영과 감독에 관한 사항
3.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
4.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
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안전건설교통국장, 사회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1. 25, 2014. 8. 14, 2016. 12. 20, 2018. 7. 31, 2018. 8. 30, 후단신설 2019. 9. 27>

1. 장애인·노인·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
2. 광명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3명 이내
3. 도시·교통·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⑤ 위원회의 간사는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)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.

1.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
2.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
3.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과 개선계획
4.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
5.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의2(실태조사)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.

[본조신설 2016. 12. 20]

제8조(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)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
2.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도로, 버스정류장과 보도의 정비

②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해 시민·여행회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④ 운송사업주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수요·공급에 따라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) ① 시장은 통신수단 등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이용자간에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과 서비스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12. 28>

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,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교통약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.

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.

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이동지원센터의 기능)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관리
2.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와 자격 심사
3.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와 관련자에 대한 안내, 상담과 교육
4.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

5.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(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)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광명도시공사,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2. 20, 2017. 6. 20>

1.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
2. 이동지원센터의 운영

②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에서 지원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」와 「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 <개정 2016. 12. 20, 2017. 6. 20>

제12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) ①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차량을 말한다.

②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,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이용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2. 28>

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·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.

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, 추가요금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3. 12. 28>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2조의2(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)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및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

도록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3. 12. 28]

제12조의3(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)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시 관할지역과 인접 생활권(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)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·조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지역을 변경·조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. 12. 28]

제13조(이용대상 및 이용제한)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3. 12. 28>

1.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의된 이용대상자
2. 버스·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3.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4. 삭제 <2023. 12. 28>

②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23. 12. 28>

1. 버스·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
2.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 대상자는 「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마련된 통합운영 표준지침을 따른다. <신설 2023. 12. 28>

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교통약자의 특성에 따라 이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,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12. 28>

[제목개정 2023. 12. 28]

제14조(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)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요금미터기에 의하여 수수하고, 동종 대중교통(버스 또는 택시 등) 이용요금 범위에서 할인 적용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공보와 인터넷에 고시한다.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[제목개정 2023. 12. 28]

제15조(예산의 확보와 지원)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,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6조(수당 등 지급) 위원에 대하여는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9>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11. 25 조례 제1731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⑱ 까지 생략

⑳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“주민생활지원국장”을 “복지문화국장”으로 한다.

㉑ 부터 ㉙ 까지 생략

부칙 <2011. 8. 9 조례 제1786호,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⑦ 까지 생략

⑧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중 “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”를 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⑨ 부터 ⑦① 까지 생략

부칙 <2014. 8. 14 조례 제2005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①⑨ 까지 생략

②⑩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건설교통국장, 복지문화국장”을 “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, 복지돌봄국장”으로 한다.

②① 부터 ④③ 까지 생략

부칙 <2016. 12. 20 조례 제222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6. 20 조례 제2264호, 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 생략

제5조 생략

제6조 생략

제7조 생략

제8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광명시 시설관리공단”을 “광명도시공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

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
3항 “광명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”를 “광명도시공사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② 부터 ⑨ 까지 생략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18. 8. 30 제240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⑩ 까지 생략

⑪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시민행복국장, 복지돌봄국장”을 “안전건설교통국장, 사회복지국장”으로 한다.

⑫ 부터 ⑳ 까지 생략

부칙 <2019. 9. 27 조례 제253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12. 28 조례 제305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